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86
------------	-------

제출년월일 : 2016. 1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에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신설하여 범죄피해자 증가로 인해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성격인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제3조 제12호)
-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제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4.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6. 9. 8. ~ 2016. 9. 28. (제출된 의견 없음)
-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폐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6. 10. 11)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단서 중 “요보호”를 “보호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2호를 같은 조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 받은 사람 중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제3조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1호까지”를 “제12호까지”로 한다.

제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하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취학 전 아동의 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장애아동 등 <u>요보호</u> 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하고,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	3. ----- ----- <u>보호가 필요한</u> -----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 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 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 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 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u>제외</u>
<p>12.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부 터 <u>제11호까지</u>에 준하는 사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u> <u>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p>	<p>13. ----- -- <u>제12호까지</u>----- -----</p> <p>제5조(시행규칙) -----<u>시행</u> <u>에</u>----- -----.</p>